

등록번호	복지지원과-549
등록일자	2026. 1. 5.
결재일자	2026. 1. 5.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주무관	노인복지 담당	복지지원 과장			
		전달 2026. 1. 5.			
이동권	정선진	천미옥			
협조자					

2026년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 사업 추진 계획(안)

<요약>

- (사업기간) 2026. 1. ~ 12.
- (지원목적) 저소득 재가어르신에게 밀반찬 배달사업을 실시하여
재가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영양수준 보장
- (지원대상) 재가 저소득 어르신 120명
- (수행기관) 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
- (소요예산) 금65,000천 원(군비)



고 성 군
(복지지원과)

2026년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 계획(안)

노인인구 및 노인 1인가구 증가로 저소득, 거동불편 등에 따른 결식 우려 노인에게 도시락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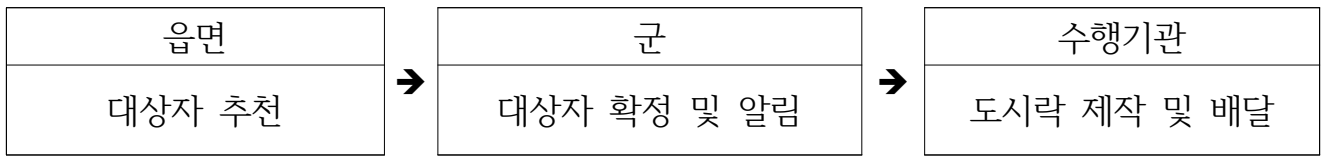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지원과 고독사 예방
-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한 급식종사자(배달봉사, 차량유류비, 도시락배달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지원

2 2026년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1. ~ 12. 31.
- (수행기관) 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 ※ 위탁계약: 2026. 1. ~ 2028. 12.(3년)
- (사업비) 금65,000천 원(군비)
 - 급식비: 57,600천 원(10천 원×120명×48회)
 - 운영비: 7,400천 원
- (지원인원) 120명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60%이하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 기타 독거노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사업내용)
 - 밑반찬(국1, 찬4)을 만들어 주 1회 노인 가정으로 배달

- 재가대상 노인의 안부확인 등의 정서적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 (급식대상자 관리)

-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이중급식 여부 관리 철저
- 대상자가 사망, 전출, 장기입원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읍면 및 수행기관에서 군에 알림

3 향후 추진계획

- 대상자 읍·면 추천: 2026. 1. 12.(월) 까지
- 수행기관 보조금 교부 신청: 2026. 1. 23.(금) 까지
- 수행기관 사업 시행: 2026. 2월(예정)

붙임 1. 읍면별 배정내역 및 추천서식 1부.

2.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점검결과 서식 각 1부. 끝.